

대구대학교 교수회 규정

2007. 10. 30. 제정
2008. 11. 27. 개정
2010. 12. 21 개정
2012. 12. 20 개정
2013. 12. 19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19장 제1절 제94조 내지 제97조에 의거하여 대구대학교 교수회(이하 “교수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조직·기능과 권한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교수회의 회원은 대구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전체 교수회에 의장을 비롯한 임원을 둔다.
③ 단과대학 교수회에 회장을 둔다.

제 3조 (조직) ①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 교수회로 조직된다.
② 전체교수회에 대의기구로서 평의원회를 둔다.

제 4조 (신의성실) ① 교수회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교수회의 임원 및 평의원은 교무위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 교수회가 추천하여 교무위원이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③ 교수회와 총장은 대학발전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를 진다. 교수회의 회원은 교수회 활동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. (2013년 12월 19일 삽입).

제 2 장 전체교수회

제5조 (구성) 전체교수회는 교수회의 회원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6조 (권한) ① 전체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
1. 대학의 중·장기 발전계획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
 2. 교육 및 연구, 학사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 3. 대학의 예산운영, 구조조정 등의 기본계획에 관한 중요사항
 4. 총장의 해임건의, 교수회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
 5. 교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6. 총장 또는 평의원회가 부의한 사항
- ② 전체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.

1. 의장, 부의장, 감사의 선출
 2. 법인이사회에 추천할 총장후보의 선출
 3. 대학평의회(학칙 제94조) 교원평의원의 선출
 4. 의안 관련 보직자의 출석 요구 및 현황청취,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.
 5. 제2호 내지 제3호의 선거권자, 피선거권자, 선출방법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총장, 부총장, 처·실장 등은 의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교수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 (총회의 개최) ① 전체교수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총장, 의장, 평의회, 또는 3개 이상 단과대학의 회원 4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.
- ④ 의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총회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. 공고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며 의안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8조(총회의 성립 및 의결)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실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이 경우 위임장은 전체회원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- ② 제1항의 전체회원이란 재적회원 중 파견, 휴직의 사유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수를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.
- ③ 총회가 성립 후 회의 계속 중 실제 출석회원이 전체회원수의 4분의 1 미만이면 자동 유회(流會)된다.
- ④ 해임건의 및 불신임을 의제로 한 총회의 경우에는 전체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되, 그 의결은 전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제9조(서면표결) ① 전체교수회는 다음의 경우에 서면표결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.

1. 총회의 서면표결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
2. 소집된 총회가 개회정족수에 미달되거나 의안 표결전 제8조 제3항에 의거 자동 유회된 경우

- ② 서면표결의 경우에는 전체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해임건의 및 불신임을 의제로 한 경우에는 전체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되, 그 의결은 전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③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서면표결에도 준용한다. 단 별도 규정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 (임원) ① 전체교수회에는 의장 1인, 부의장 2인, 감사 2인, 사무국장 1인, 간사 약간 명을 임원으로 둔다. 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은 분과를 둘 수 있다. (2013

년 12월 19일 삽입).

-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교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 의장, 부의장, 감사의 선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
- ④ 사무국장과 간사는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 (임원의 역할)

- ① 의장은 교수회를 대표하고 전체교수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할한다.
-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의장의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때에는 제10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③ 감사는 교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- ④ 사무국장과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여 교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예우) 교수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무국) ① 교수회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.

- ② 사무국에는 행정지원을 위한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 3 장 평 의 원 회

제14조 (구성) ① 평의원회는 전체교수회의 의장, 부의장,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, 그리고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각 단과대학별 평의원수는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을 포함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다.

- 1. 소속대학 회원수 1인 이상 20인 미만 대학에서는 1인
- 2. 소속대학 회원수 20인 이상 40인 미만 대학에서는 2인
- 3. 소속대학 회원수 40인 이상 60인 미만 대학에서는 3인
- 4. 소속대학 회원수 60인 이상 대학에서는 4인

- ③ 평의원은 선출일을 기준으로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교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2010년 12월 21일 개정).

- ④ 단과대학 선출 평의원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후임자를 인선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- ⑤ 소속대학이 없는 학부와 교육대학원 모두를 포함하여 1개의 대학으로 간주하고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른다. (2010년 12월 21일 삽입). (2013년 12월 19일 괄호 삭제).

제15조 (권한) ①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
- 1. 대학의 경영에 관한 사항

2.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
4. 대학의 예산·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
5. 교수의 신분·권익 및 복지에 관한 사항
6. 학내 구성원의 청원 사항
7. 대학의 학칙 및 기타 중요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[단, 학칙 제 94조 내지 98조(교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) 등 전체교수 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]
8. 교수회에 관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- ② 제1항의 평의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전체교수회가 이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평의원회의 의결이 전체교수회의 의결과 배치되는 경우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- ③ 평의원회는 의안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자의 출석 요구 및 현황청취,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평의원회는 특정의안이 전체회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, 전체교수회에 부의할 수 있다.
- ⑤ 평의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특별위원회에는 평의원이 아닌 교수, 직원, 학생, 동문, 학부모, 학외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

제16조 (회의의 성립 및 의결) ① 평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.

- ② 회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평의원은 위임장에 의해 출석을 위임할 수 없다.
- ④ 평의원에게 의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그 의안의 표결에서 제척된다.
- ⑤ 의장은 평의원회의 활동내용을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제17조 (교권옹부즈만) ① 평의원회에 교권옹부즈만을 둔다.

- ② 교권과 관련하여 회원이 심히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당해 회원은 교권옹부즈만에게 진정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교권옹부즈만의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한다.
- ④ 교권옹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4 장 단과대학 교수회

제18조 (구성) 단과대학 교수회는 당해 대학 소속 교수회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9조 (권한)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당해 대학의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
1. 단과대학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 2. 단과대학 교수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 3. 구성원의 청원 사항
- ② 단과대학 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.
1. 학장후보 선출
 2.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 및 평의원(교수회 규정 제14조 제2항)의 선출
- ③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결이 전체교수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과 배치되는 경우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제20조 (회의)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.
 ② 임시회의는 학장, 회장, 또는 해당 단대 교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.

제21조 (임원)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회장 1인을 둔다.
 ② 단과대학 교수회는 당해 대학 교수회 규정에 의거 평의원을 불신임 결의하여 소환할 수 있다.

제22조 (규정) 단과대학 교수회는 해당대학의 교수회의 구성·조직, 운영을 위하여 단과대학 교수회 규정을 둘 수 있다.

제 5 장 재 정

제23조 (재정) ① 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본대학교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 ②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6 장 규정의 개정

제24조 (개정) ① 교수회 규정의 개정은 3개 이상 단과대학의 회원 50인 이상 또는 평의원회의 발의로 제안된다.
 ② 개정안의 의결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실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③ 제2항의 경우에 위임장은 전체회원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.
 ④ 제8조 제2항(전체회원의 정의), 제3항(자동유회 규정)은 본조 제2항에 준용한다.

제25조 (세칙의 제정)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(2007. 10. 30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최초의 선출직 임원의 임기개시) 이 규정에 의한 최초의 교수회 의장 등 선출직 임원의 임

기는 전체교수회에서 선출된 익일로부터 개시한다.

부 칙 (2008. 11. 2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0. 12. 2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 12. 20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 12. 19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